

# 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】

의안 번호	442
----------	-----

2024. 6. 11.  
자치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5. 31. / 김지훈(국) 의원 등 9명  
나. 회부일자 : 2024. 5. 31.  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6. 11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전문체육시설·생활체육시설·직장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3조)
-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5조)
-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안건입니다.

체육시설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격렬한 활동을 하므로 응급 조치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는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만 해당되어 우리시 공공체육시설 144개소 중 69개소에만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에서

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생활체육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,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#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# 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1부.